

울산지방법원 2024. 4. 9 선고 2023가단1101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용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기묵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훈

변론 종결 2024. 2. 26.

판결 선고 2024. 4. 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7. 22.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2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4. 11. 15. C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20. 7. 22.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다.

나. C은 2012. 6. 29. 매매를 원인으로 2012. 8. 20. 울산지방법원 등기와 2012. 8. 20. 접수 제8731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층과 지상 1층에는 'D'이라는 상호의 목욕탕이 있고, 지상 2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원룸이 있다. C은 D의 운영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1) 피고는 2020. 7. 22.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20. 8. 3. 울산지방법원 등기와 접수 제128228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C과 피고 사이의 2020. 7. 22.자 재산분할약정을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

2) 이후 원고는 2020. 11.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20. 11. 26. 울산지방법원 등기와 접수 제189686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10월경 C과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 그 합의상 '임대인'은 C을, '임차인'은 원고를 각 의미한다(이하 그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임대조건----

조건 6.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까지 이 부동산이 매매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하거나 협조하여야 하며, 그리하여 만일 매매가 이루어질 시에는 얼마에 매매가 되든지 간에 임대인은 일체의 세금이나 보증금 반환 부담 없이 원금에서 1억 원 손해 본 9억 5천만원만 가져가기로 하고, 나머지 전부는 임차인이 가진다. 그러나 이때 매매에 따른 양도세 등 국·지방세 전부, 원룸 등 각종 보증금, 각종 공과금 및 수수료 등 일체 비용은 전액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20. 11.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바, 그 매매계약 체결일에는 피고가 C과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하였다는 사실과 그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3. 4. 20.에야 비로소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추인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위임받아 2012년경부터 위 부동산을 관리하며 실제 D을 운영하여 왔을 뿐 아니라, 2019. 10월경에는 C과 이 사건 합의를 하기도 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관계, C과 피고의 관계, C의 재정상태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 피고는 2020. 8.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부동산을 관리하였던 원고는 그 소유권 변경내역을 그때 알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의 소유권취득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제기를 한 바 없어 보이고, 오히려 피고가 적법한 재산분할협의를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2020. 11. 19.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2020. 11. 19.경에는 C에 대한 원고 주장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일인 2020. 11. 19.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4. 2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조상민

별지